



제422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의무 기피 범죄자 보충역·전시근로역 처분 금지〉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47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병역 기피·감면 목적 「병역법」 위반자 보충역 등으로 병역 처분 변경 금지	3
2. 병역 기피·감면 「병역법」 위반 범죄와 다른 범죄 경합 시 선고	6
※ 참고자료	
1. 병역 기피·감면 관련 「병역법」 상 처벌 조항 현황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규백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하는 것은 병역기피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하여 병역기피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제2호 단서 신설 및 제9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 제8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의 병역 처분 변경을 금지하고(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병역 기피·감면 목적 「병역법」 제86조 등 위반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 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단서 신설>	2. ----- 사람. 다만,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⑬ (생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신설>	제94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1. 병역 기피·감면 목적 「병역법」 위반자 보충역 등으로 병역 처분 변경 금지

☐ 현행 법률¹⁾에서는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 처분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형자를 현역병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수형자 군 입영 허용 시 주변 장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지휘관의 관리 부담이 증가하며 군 기강 유지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994년부터 수형 사유 병역 감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 처분을 변경하고 있음.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도 관련 연혁>

적용연도 (근거)	주요 내용	세부 사항
1994.10.6. (영 제14397호)	제2국민역 편입대상 규정	○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실형 선고자 중 27세 이상
1997.5.27. (영 제15380호)	제2국민역 및 보충역 편입기준 규정	○ (제2국민역) 2년 이상 실형 선고자 ○ (보충역) 1년 이상 실형 선고자
1999.12.31. (영 제16668호)	수형자 감면기준 완화	○ (제2국민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 ○ (보충역) 6월 이상 실형 선고자, 1년 이상 형의 집행유예자
2011.11.25. (영 제23305호)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감면 배제	○ 고의적 신체손상, 사위행위로 인한 형 선고자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
2025.1.3. (영 제34624호)	병역법 위반죄 수형자 감면 배제 대상 확대	○ 입영·소집 기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 병역법 위반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배제 대상 확대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의 수형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병역기피자가 현역병 복무를 면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범죄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법」 관련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의 병역 처분 변경을 법률로 금지함으로써 병역기피자의 범죄 의도 실현을 방지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이 병역 이행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수형자 병역감면(보충역·전시근로역) 처분 현황>

(‘24.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보충역	1,076	1,196	1,046	1,216	1,311	1,217	1,076
전시근로역	1,730	1,666	1,699	1,273	1,475	1,423	1,433

* 자료 : 국방부

□ 다만, 최근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²⁾이 개정(2025.1.3.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도 병역 기피·감면 목적 「병역법」 위반자의 보충역·전시근로역 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2. 병역 기피·감면 「병역법」 위반 범죄와 다른 범죄 경합 시 선고

□ 「형법」 제38조³⁾에 따라 경합범일 경우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안 제6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병역법」 제86조 등 병역 기피·감면 시도)를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가 경합범인 경우 법원에서 형의 선고 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경합범의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병역법」 위반 범죄 형량과 다른 범죄 형량의 구분이 가능하게 하여 범죄 유형에 따라 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 병역 처분 변경 가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해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 및 병무청은 시행 시기에 대하여 별도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점, 강력범죄자 등의 입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분리 선고 규정 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3)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있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

※ 참고자료

1. 병역 기피·감면 관련 「병역법」상 처벌 조항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제86조	•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자 등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 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의2	• 대체역 편입 목적으로 서류 거짓 작성 또는 거짓 진술한 자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